

속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507
----------	-----

제출년월일 : 2006. 10. .

제 출 자 : 속 초 시 장

1. 제안이유

- 속초시의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출산장려를 촉진하므로서 인구증대를 도모하고자
-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절차와 기준, 지원액 등 출산장려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활한 출산장려 지원시책을 추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시책의 용어 (안 제2조)

- － 건강검진비 : 포태중인 산모와 태아의 건강검진을 위해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
- － 출산장려금 :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영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
- － 출산준비금 : 신생아의 출산준비를 위해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

나. 지원대상 (안 제3조)

- － 건강검진비 : 속초시에 3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신 6월에서 출산일 전일까지 거주중인 임산부
- － 출산장려금 : 출산일을 기준으로 3월전부터 속초시에 거주중인 출산가정

※ 단, 신생아의 부모가 3월이하 거주자인 경우 3월 경과후 지원 대상이 됨

- 출산준비금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3월전부터 속초시에 거주중인 임산부
- 미혼모로부터 출생한 영아의 경우에도 출산지원금 지원
- 입양아의 경우, 입양일 3월전부터 속초시에 거주하고 12월미만의 영아를 입양한 경우 출산장려금 지급

다. 시책별 지원액 (안 제5조)

구 분	대 상	지급단위	지원액	지원개월수	총지원액
건강검진비	모 임 산 부	임신 6월부터 출산전	1회 10만원		10만원
출산장려금	둘 째	매 월	10 만원	12월	120만원
	셋째이상	매 월	10 만원	36월	360만원
출산준비금	모 신 생 아	임신 10월 또는 조기 분만시	1회 10만원		10만원
	쌍태아일 경우 자녀수에 따라 지원				

라. 지원절차 (안 제6조)

-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인적 사항 등을 확인하여 기록서명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
- 보건소장은 신청서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15일까지 신청인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

마. 지원시책 중단 (안 제7조)

- 지원대상자의 변동이 발생할 경우, 그 사항을 다음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통보
- 보건소장은 전출 등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지않은 사실이 확인 되는 달부터 출산지원금 지원 중단

바. 시민들이 미리 당해연도의 예산확보 내용과 지급방법에 관해 알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 (안 제9조)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별첨)

-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및 제22조, 가정 및 자녀양육 지원)
-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 입법예고 (2006. 9. 6 ~ 9. 26) 결과, 특기사항 없음

속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산률 저하에 따른 노동력 감소와 인구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장려의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부모를 대상으로 출산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산부”라 함은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월 미만의 여성을 말한다.
2. “영아”라 함은 출생 후 1년 미만의 자, “신생아”라 함은 출생 후 28일 미만의 자를 말한다.
3. “건강검진비”라 함은 포태중인 산모와 태아의 건강검진을 위해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4. “출산장려금”이라 함은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영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5. “출산준비금”이라 함은 산모의 출산 준비를 위해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6. “출산가정”이라 함은 영아와 함께 보호자(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건강검진비 지원대상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3월 전부터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6월부터 출산일 전일까지의 임산부로 한다.

②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은 출산일을 기준으로 3월 전부터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출산가정으로 한다.

③출산준비금 지원대상은 출산예정일을 기준으로 3월 전부터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로 한다.

④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모가 3월 이하 거주자인 때

에 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3월이 경과될 때까지 거주한 때에 제2항의 지원대상이 된다.

⑤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미혼모의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⑥입양아의 경우 입양일 3월 전부터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에서 영아를 입양하였을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입양아는 시외 지역에서 입양한 자 이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의 확인 등) ①보호자가 지원금 신청시 보건소장 및 동장은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일 경우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건강검진비 지원대상자는 임신 6월부터 출산일 전일까지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강검진비 지원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2. 의료기관 임신 진료확인서 또는 소견서 1부
3. 예금통장 사본 1부

③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출생 또는 입양 신고 후 60일 이내에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4항의 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2. 예금통장 사본 1부

④출산준비금 지원대상자는 임신 10월 또는 조기분만시 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구비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출산준비금 지원신청서 1부 (별지 제3호서식)
2. 의료기관 임신 진료확인서 또는 소견서 1부
3. 조기출산시 미숙아 출생보고서 1부
4. 예금통장 사본 1부

제5조(지원액) 건강검진비, 출산장려금, 출산준비금(이하 “출산지원금”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강검진비는 1회에 한하여 10만원을 지원할 수 있으며, 쌍태아를 포태시에서도 1회만 지원한다.
2. 출산장려금은 둘째아부터 출산순위에 따라 차등지원하며,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순위로 각각 지원하되, 둘째아는 매월 10만원을 1년간 지원할 수 있으며, 셋째아 이상의 경우는 매월 10만원을 3년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출산 순위는 주민등록 등재순으로 한다.
3. 출산준비금은 임신 10월 또는 조기분만시 1회에 한하여 10만원을 지원하며, 쌍태아 또는 쌍생아일 경우 자녀수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출산지원금의 지원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 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관내 거주기간, 신생아 생년월일 등을 확인하여 증명원대조확인처리인에 기록·서명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보건소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15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조치 하여야 한다.
3. 보건소장은 입금조치 후 신청인에게 전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이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지원중단) 보건소장은 매월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가 전출 등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달부터 출산지원금 지원을 중단한다.

제8조(임산부·영유아 등록관리) 보건소장은 출산지원금을 지원한 산모와 영유아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모자보건증진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 「모자보건법」 제10조에 의한 임산부·영유아 등의 건강관리를 실시한다.
2. 모자보건사업에 필요한 연도별 출생아현황, 모유 수유율 등 기초통계자료를 조사하여 지역 모자보건사업 계획 등에 활용한다.

제9조(지급공고) 시장은 당해연도 예산확보 내용과 지급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속초시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환수조치) ①보건소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산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출산지원금 지원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대장 등 비치)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동장은 출산지원금 신청대장(별지 제4호서식), 보건소장은 출산지원금 지원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에 관한 사항) ①동장은 당월 출생신고 및 출산지원금 신청현황(별지 제6호서식)을 그 다음달 5일 이내에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동장은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가 전출 등 변동사항이 발생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 변동사항(별지 제7호서식)을 그 다음달 5일 이내에 보건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건강검진비 지원신청서

(접수번호 :)

임부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최종월경일		분만에정일	
분만에정 의료기관		현 재 임신주수 (개월)	
주 소	강원도 속초시		
전화번호	자 택		HP
입금계좌	은행 명	계좌번호	예금주
「속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건강검진비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 소 :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속 초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의료기관 임신 진료확인서 또는 소견서 1부,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 증명원대조확인처리인 】			
확 인 사 항	신청인 주소 : 거 주 기 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년 월)		
민원확인자	소속	직명	성명 (서명)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서

(접수번호 :)

보호자	부		주민등록번호			
	모		주민등록번호			
신생아	성명			주민등록번호		
	보호자와 관계	의 자녀 중 ☐ 둘째 ☐ 셋째이상				
	분만의료기관			분만일자	년 월 일	
주소	강원도 속초시					
전화번호	자택			HP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속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출산장려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소 : 신생아와의 관계 :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속 초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 증명원대조확인처리인 】						
확인사항	신청인 주소 : 거주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년 월) 신생아 생년월일 : 년 월 일					
민원확인자	소속		직명		성명	(서명)

※ 신생아가 쌍태아 이상인 경우 각각 신청서 작성

출산준비금 지원신청서

(접수번호 :)

임부명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주민등록번호																										
최종월경일		분만예정일																										
분만예정 의료기관			현재 임신주수 (개월)																									
자녀수	의 자녀 중 ☐ 첫째 ☐ 둘째 ☐ 셋째이상																											
주 소	강원도 속초시																											
전화번호	자택			HP																								
입금계좌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속초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출산준비금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주 소 : 신청인 성 명 : 서명 또는 날인 년 월 일 속 초 시 장 귀하 첨부서류 : 의료기관 임신진료확인서 또는 소견서 1부, 예금통장 사본 1부 【 증명원대조확인처리인 】 <table><tr><td rowspan="3">확인사항</td><td colspan="5">신청인 주소 :</td></tr><tr><td colspan="5">거주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년 월)</td></tr><tr><td colspan="5">신생아 생년월일 : 년 월 일</td></tr></table> <table><tr><td>민원 확인자</td><td>소속</td><td></td><td>직명</td><td></td><td>성명</td><td>(서명)</td></tr></table>						확인사항	신청인 주소 :					거주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년 월)					신생아 생년월일 : 년 월 일					민원 확인자	소속		직명		성명	(서명)
확인사항	신청인 주소 :																											
	거주기간 :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년 월)																											
	신생아 생년월일 : 년 월 일																											
민원 확인자	소속		직명		성명	(서명)																						

※신생아가 쌍태아 이상인 경우 각각 신청서 작성

[별지 제4호서식]

출산지원금 신청대장

연번	보 호 자 (부 또는 모)					신 생 아		전화 번호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거주기간	직 업	성 명	주민등록번호	
				년 월				

※ 임신부 건강검진비, 출산장려금, 출산지원금 종별로 구분 작성

[별지 제5호서식]

출산지원금 지원대장

연 번	보 호 자 (부 또는 모)					신 생 아		신청일	지급일	입금 계좌 번호
	주 소 (전화번호)	성 명	주민등록 번호	거주기간	직 업	성 명	주민등록 번호			
				년 월						

※ 임신부 건강검진비, 출산장려금, 출산지원금 종별로 구분 작성

출생신고 및 출산지원금 신청현황

(단위 : 건)

구 분	출 생 신 고			출산장려금 신 청	출산준비금 신 청	건강검진비 신 청	비 고
	계	지원대상	미지원대상				
월 계							
누 계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 변동사항

연월	임산부·보호자 (부또는모)			신 생 아		변동 사유	변동 일시	비고
	주 소	성 명	관 계	성 명	주민등록 번호			

※ 변동사유란은 전출·사망등으로 기재하되, 전출시는 전출지역 명시

관 계 법 령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 2005.3.24 법률 7413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가정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며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가정은 개인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사회통합을 위하여 기능할 수 있도록 유지·발전되어야 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가족"이라 함은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2. "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3. "건강가정"이라 함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정을 말한다.
4. "건강가정사업"이라 함은 건강가정을 저해하는 문제(이하 "가정문제"라 한다)의 발생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와 가족의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의 가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4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모든 국민은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안정되고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가정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모든 국민은 가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가족구성원의 특성과 가정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인 가정형성, 가정친화적 환경조성, 양성평등한 가족가치 실현 및 가사노동의 정당한 가치평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건강가정사업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 (가족가치) 가족구성원은 부양·자녀양육·가사노동 등 가정생활의 운영에 함께 참여하여야 하고 서로 존중하며 신뢰하여야 한다.

제8조 (혼인과 출산) ①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모성보호와 태아의 건강보장 등 적절한 출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 (가족해체 예방) ①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 (지역사회자원의 개발·활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자원을 최대한 개발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제11조 (정보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구성원에게 건강한 가정 생활을 영위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고 가정생활에 관한 정보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제12조 (가정의 날) 가정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건강가정을 위한 개인·가정·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을 가정의 달로 하고, 5월 15일을 가정의 날로 한다.

제2장 건강가정정책

제13조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 ①건강가정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소속하에 중앙건강가정정책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중앙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건강가정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
3. 건강가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4. 건강가정정책의 평가
5. 건강가정 전담인력의 선발·관리에 관한 기본방안
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비용분담
7. 그 밖에 중앙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중앙위원회는 제2항의 심의사항을 검토·연구하기 위하여 중앙위원회에 건강가정실무기획단(이하 "실무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④중앙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중앙위원회의 구성·조직 그 밖의 운영 및 실무기획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시·도 건강가정위원회) ①건강가정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건강가정위원회(이하 "시·도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시·도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건강가정에 관한 시행계획
2. 건강가정을 위한 재정지원
3. 건강가정과 관련된 사업
4. 그 밖에 시·도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③시·도 위원회의 구성·조직 그 밖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건강가정기본계획의 수립) ①여성가족부장관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가정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가족기능의 강화 및 가정의 잠재력개발을 통한 가정의 자립 증진 대책
2. 사회통합과 문화계승을 위한 가족공동체문화의 조성
3. 다양한 가족의 욕구충족을 통한 건강가정 구현
4. 민주적인 가족관계와 양성평등적인 역할분담
5. 가정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
6. 가족의 양육·부양 등의 부담완화와 가족해체예방을 통한 사회비용 절감
7. 위기가족에 대한 긴급 지원책
8. 가족의 건강증진을 통한 건강사회 구현
9. 가족지원정책의 추진과 관련한 재정조달 방안

③기본계획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④여성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없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제16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여성가족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건강가정시행계획(이

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그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매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②시행계획의 수립·추진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시·도별 시행계획의 조정 등) ①여성가족부장관은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시·도별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②여성가족부장관은 시·도별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배되는 경우에는 당해 시·도지사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제18조 (계획수립의 협조) ①여성가족부장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공기관·사회단체 그 밖의 민간기업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 (교육·연구의 진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과 관련된 연구를 진흥하고 전문가를 양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여야 한다.

제20조 (가족실태조사)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과 가족의 생활실태를 파악하고, 건강가정 구현 및 가정문제 예방 등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제3장 건강가정사업

제21조 (가정에 대한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가족구성원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지원
2. 소득보장 등 경제생활의 안정
3. 안정된 주거생활
4. 태아검진 및 출산·양육의 지원
5. 직장가정의 양립
6. 음란물·유혹·폭력 등 위해환경으로부터의 보호
7. 가정폭력으로부터의 보호
8. 가정친화적 사회분위기의 조성
9. 그 밖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강화·지원할 수 있는 관련 사항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취업여성의 임신·출산·수유와 관련된 모성보호 및 부성보호를 위한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부자가정, 노인단독가정, 장애인가정, 미혼모가정, 공동생활가정, 자활공동체 등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⑤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2조 (자녀양육지원의 강화)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고 아동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보육 및 방과후 서비스, 양성평등한 육아휴직제 활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하여 나아가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사노동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이를 관련 법·제도 및 가족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 (가족단위 복지증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험·공공부조

등 사회보장제도의 운용과 관련하여 보험료의 산정·부과, 급여 등을 운용함에 있어서 가족을 지지하는 시책을 개발·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사회, 교육·문화, 체육, 지역사회개발 등 각 분야의 제도·정책 및 사업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가족을 우대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4조 (가족의 건강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아동, 청소년, 중·장년 등 생애주기에 따르는 가족구성원의 종합적인 건강증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5조 (가족부양의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혹은 노인 등 부양지원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에 대하여 부양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질환이나 장애로 가족내 수발을 요하는 가족구성원이 있는 가정을 적극 지원하며,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전문보호시설을 확대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구성원중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사고로 간병을 요할 경우 가족간호를 위한 휴가 등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6조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부부 및 세대간에 가족갈등이 있는 경우 이를 예방·상담하고,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가족지원서비스를 확대하고, 다양한 가족생활교육·부모교육·가족상담·평등가족홍보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이 있는 가정의 경우 가정폭력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개입에 있어 전문가의 체계적인 개입과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 (가족단위의 시민적 역할증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의 결속력과 가족구성원의 발전을 위하여 가족이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증

진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족단위의 자원봉사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 (가정생활문화의 발전)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의 생활문화를 고취하고 그에 대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여야 하는 건강가정의 생활문화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가족여가문화
2. 양성평등한 가족문화
3. 가족단위 자원봉사활동
4. 건강한 의식주 생활문화
5. 합리적인 소비문화
6. 지역사회 공동체문화
7. 그 밖에 건강가정의 생활문화와 관련된 사항

제29조 (가정의례) ①개인과 가정은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전한 가정의례를 확립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0조 (가정봉사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한 가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육아·산후조리·간병 등을 돕는 가정봉사원(이하 "가정봉사원"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가정봉사원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3.24>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봉사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일정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④가정봉사원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제31조 (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가 이혼전 상담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이혼조정을 내실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의 의사가 정해진 가족에 대하여 이들 가족이 자녀양육·재산·정서 등의 제반문제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혼한 가족에 대하여 양육비에 대한 집행력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그 적용대상을 확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2조 (건강가정교육)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결혼준비교육
2. 부모교육
3. 가족윤리교육
4. 가족가치실현 및 가정생활관련 교육 등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가정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3.24>

제33조 (자원봉사활동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과 관련 되는 자원봉사활동사업을 육성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제4장 건강가정전담조직 등

제34조 (건강가정사업의 전담수행) 여성가족부, 시·도 및 시·군·구(자치구에 한한다. 이하 같다)는 건강가정사업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제35조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

운동의 전개,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중앙, 시·도 및 시·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②센터에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전문가(이하 "건강가정사"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

③건강가정사는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5.3.24>

④센터의 조직·운영 및 건강가정사의 자격·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센터의 운영은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5.3.24>

제5장 보칙

제36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7166호,2004.2.9>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2005.5.18 법률 7496호]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구의 고령화"라 함은 전체인구에서 노인의 인구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2.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라 함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 (국민의 책무) ①국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국민은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상호연대를 강화하고 각자의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가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

제1절 저출산 대책

제7조 (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 (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 (모자보건의 증진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부·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절 고령사회정책

제11조 (고용과 소득보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 (건강증진과 의료제공)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령단계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 제도 등을 확립·발전 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설비를 갖춘 주거와 이용시설을 마련하고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노후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재해와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 (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5조 (평생교육과 정보화)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세대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교육시설의 설치·인력의 양성 및 프로그램의 개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세대간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 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6조 (취약계층노인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노인·장애노인 등 취약계층의 노인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고 도시·농어촌지역간 격차 등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7조 (가족관계와 세대간 이해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을 장려함으로써 노인이 가정과 사회에서 공경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대간 교류의 활성화와 세대간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가 형성되도록 필요한 사회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18조 (경제와 산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경제·산업구조 및 노동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 (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수요의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에게 필요한 용구와 용품 등의 연구개발·생산 및 보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장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20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①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4.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④보건복지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에 대하여 미리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 (연도별 시행계획)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기본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④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 (업무의 협조)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안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저출산·고령사회 관련 계획 및 정책,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3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①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중·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전망에 관한 사항
2.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5.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제5항의 간사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고령화 및 저출산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자

⑤위원회에 간사위원 2인을 두며, 간사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제4항 제2호의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 (전문위원회 등의 설치)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위원회의 업무 중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전문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연구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사무국 및 제2항의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의 설치) ①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조정 및 평가 등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를 둔다.

②제1항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관계행정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7조 (국회보고) 정부는 기본계획·시행계획 및 이에 대한 평가 등을 확정 후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28조 (전문인력의 양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연구소·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해당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9조 (조사 및 연구)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기관을 설치하거나 연구소·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30조 (민간의 참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31조 (국제교류의 활성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여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32조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의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7496호,2005.5.1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본계획 등에 관한 적용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2006년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 (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설치,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공공단체 및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시행 전에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관계 전문가 그 밖에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